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중

1. 의결주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재의 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해지는 소방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2022.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의 내용·절차,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의 내용·절차(안 제3조)

- 1)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함.
- 2) 화재조사는 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현장 조사, 감정·감식 등 정밀 조사와 화재조사 결과 보고의 절차로 실시하도록 함.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운영(안 제4조)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에 화재조사관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감정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다.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안 제7조)

- 1)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 2)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단원은 화재조사관 등의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라.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안 제12조·제13조)

- 1)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화재감식 평가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할 것 등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2)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하여 지정 신청서와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등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 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을 지정 취소 사유로 정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소방관서장의 허가 없이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에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한 경우 등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현재까지 입법예고(2022. 4. 11. ~) 중 특기할 사항 없음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조사의 대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2.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나.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상황 파악 등
2. 화재현장 조사: 화재의 발화(發火)원인, 연소상황 및 피해상황 조사 등
3. 정밀조사: 감식·감정, 화재원인 판정 등
4. 화재조사 결과 보고

제4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 화재조사관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에는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부서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① 화재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재감식평가기사 또는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

으로 실시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방법, 과목,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2. 화재조사관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3.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을 위한 의무 보수교육

②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른 소방관서나 화재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화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여 소방관서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이하 “화재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지명하는 사

람으로 한다.

③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재조사관
2.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안전 분야 또는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 및 단원은 화재조사관으로 본다.

⑥ 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조사를 완료하면 소방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개요
2. 화재조사 개요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4.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분석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 또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①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 범위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 기간

3.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 이유 및 주체

② 화재조사관이나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은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의 통제구역 출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1.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관계인등에 대한 출석 및 질문 등)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출석 일시와 장소
2. 출석 요구 사유
3. 그 밖에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인등은 지정된 출석 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출석 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석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소방관서장은 출석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조사관에게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시험·분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증거물을 수집한 경우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수집한 증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거물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1. 해당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조사가 완료되는 등 증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거물의 수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감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증거물, 화재조사 장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

나.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보관할 수 있는 시설

다. 증거물의 감식·감정을 수행하는 과정 등을 촬영하고 이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처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

2. 화재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할 것

가. 주된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재감식평가기사 또는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

4)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식·감정 장비, 증거물 수집 장비 등을 갖추는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감정기관 지정 절차 및 취소 등) ①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2.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 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화재조사 관련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4.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 비용을 청구한 경우

④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감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지정이 취소된 감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정기관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다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정보를 수집·관리한다.

1. 화재원인
2. 화재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관계 법령 등의 이행 및 위반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화재정보를 기록·유지 및 보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감정기관을 말한다.

제16조(민감정보의 처리)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명피해상황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관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증명
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
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경찰서장이 설정한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줄여 부과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2호	100	150	2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 른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 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3호	100	150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연 락 처	(044) 205 - 7475